

문서번호	문화체육과-1600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관광담당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주영	이명근	장순봉	박형중	김병환	03/16 김영배
협 조	<p style="text-align: right;">정무보좌관 윤정배 법제통계담당 박기훈</p>				

성북구립남성합창단 창단 및 운영계획



2016. 3.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성북구립남성합창단 창단 및 운영계획

문화예술분야에서 남성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성북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동할 구립남성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2016년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II

추진방향

- 밝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문화발전에 기여
-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동
- 남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문화역량 제고

III

합창단 구성

- 성북구립남성합창단 구성(안) : 총 43명
 - 단 장 : 부구청장(당연직)
 - 단 원 : 42명(지휘자 및 반주자 포함)
 - 단원 자격 : 만19세 이상 **만57세 이하**의 남성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성북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
 - 단원의 정년은 남성합창단의 원활한 모집 추진과 구립여성합창단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만55세에서 **만57세로 연장**(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사항)

○ 구성정원

구분	총원	단장 (부구청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			
					계	테너	바리톤	베이스
정원	43	1	1	1	40	20	10	10

▷ 각 파트별 인원수는 단원 정원수 내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

IV

합창단 운영

■ 운영주관 : 문화체육과

■ 정기합창연습

- 일시 : 주 1회 이상, 매주 목요일(17:00~19:00) *(예정)*
- 장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예정)*
 - 정기이용이 어려울 경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대관 이용 검토(피아노 구매 필요)
- 내용
 - 발성연습 및 파트별 연습
 - 행사 출연 및 대회참가를 위한 지정곡 연습
 - 정기연주회 등 공연을 위한 사전준비

■ 합창단 연습활동비 지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지급
 - 지휘자 월 800,000원, 반주자 월 500,000원
- 단원 연습 증식비 지원
 - 1회 출석시 1인당 7,000원 (매월 정산하여 출석회수에 따라 지급)

■ 정기공연 및 구청 주관행사 등 출연

- 구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위한 정기연주회 개최(연 1회)
 - 해맞이 행사,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구청 주관 주요행사에 출연
 - 외부기관 행사 출연 요청시 찬조출연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
- ※ 창단 당해연도에는 합창단의 단합과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에 집중

■ 남성합창단 창단 법적근거 마련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 남성합창단 정원 규정 추가
 - [별표 2] 예술단체의 임원 : 남성합창단 임원진 규정 추가
 - 제9조(임원의 임기) 제2항 : 단원의 정년 연장(만55세 → 만57세)
-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 수립 후 추진(2016. 3월 ~)

■ 지휘자 및 반주자 모집(2016. 5월)

- 모집인원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 모집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모집공고 : 2016. 5. 9 ~ 5. 23 <14일간> (예정)
 - 원서접수 : 2016. 5. 16 ~ 5. 23 <7일간> (예정)
 - 접수장소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발방법 :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 예능심사위원회 구성(5명) : 문화체육과장 외 내부 관계자 1명, 외부 전문가 3명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거 객관적으로 심사(응모자 중 3명 내외 선발)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거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최고득점자 1명 선발

■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2016. 6월)

- 합격자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신규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식 개최 : 부구청장실
- 지휘자 위촉 이후 합창단 파트별 구성과 2016년 운영계획에 대해 세부협의

■ 합창단원 모집(2016. 6월)

- 모집인원 : 40명
- 지원자격 : 합창에 관심 있는 만55세 이하의 성인 남성
- 모집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모집공고 : 2016. 6. 8 ~ 6. 22 <14일간> (예정)
 - 원서접수 : 2016. 6. 15 ~ 6. 22 <7일간> (예정)

- 접수장소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 모집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추가모집에도 모집인원이 적을 경우 2016년도는 **한시적으로 중창단으로 운영**

■ 합창단원 선발(2016. 6월)

- 심사방법 :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기 및 면접심사 실시
 - 실 기 : 지정곡 또는 자유곡 1~2곡 시창, 심사표에 의거 점수 산정
 - 면 접 : 실기심사 이후 자유 질문답변
- 합격자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남성합창단 창단식 개최(2016. 7월)

- 일 시 : 2016. 7. 21(목) **(예정)**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 대 상 : 구청장, 시·구의원, 복지문화국장, 신규 합창단원 및 가족 등
- 내 용
 - 성북구립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
 - 성북구립남성합창단 창단에 대한 축하
 - 성북구립남성합창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 성북구립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2016. 12월)

VI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6,980천원(6개월분)**

■ 예산과목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예술단체 운영

- 일반운영비 : 1,000천원(행사운영비)
 - 남성합창단 관련 홍보물 제작비
- 일반보상금 : 25,980천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지휘자, 반주자 보수 및 합창단원 종식비, 단복구매비 등

- 문화체육과 : 안정적인 정기합창연습 공간 확보 철저, 지휘자 및 반주자, 합창단원 선발시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
-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협조
- 홍보전산과 : 남성합창단원 모집 홍보를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성북소리, 블로그 등에 홍보문 게시 및 창단식 관련 보도자료 배포
- 동 주민센터 : 남성합창단원 모집시 각 직능단체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으로 모집 홍보

붙 임 : 1. 서울시 자치구 합창단 구성 및 정년규정 현황 1부.
2.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합창단 구성 및 정년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합창단 구성	남성합창단		단원 자격(성인)		비 고
			운영여부	정원(명)	최소연령	정년	
1	종로구	여성	X	-	만20세	만60세	문화재단 운영
2	중 구	여성	X	-	만20세	만55세	문화재단 운영
3	용산구	여성, 소년소녀	X	-	만20세	무 (내부 만60세)	
4	성동구	여성, 소년소녀	X	-	만20세	만55세	
5	광진구	여성, 청소년	X	-	만20세	만60세	문화재단 운영
6	동대문구	여성	X	-	무	무 (내부 만60세)	
7	종량구	여성	X	-	만20세	만60세	
8	성북구	여성, 실버	X	-	무	만55세	
9	강북구	여성, 실버	X	-	만25세	만58세	
10	도봉구	여성	X	-	만20세	만60세	
11	노원구	여성, 청소년	X	-	만25세	만55세	
12	은평구	여성	X	-	무	무 (내부 만55세)	
13	서대문구	여성, 소년소녀	X	-	무	무 (내부 만55세)	
14	마포구	여성, 소년소녀	X	-	만20세	만55세	문화재단 운영
15	양천구	여성	X	-	만20세	만55세	
16	강서구	여성	X	-	무	무 (내부 만55세)	
17	구로구	소년소녀	X	-	-	-	
18	금천구	여성	X	-	만19세	무	
19	영등포구	여성, 시니어	X	-	만20세	만55세	
20	동작구	여성	X	-	만19세	만60세	
21	관악구	여성	X	-	만25세	만55세	
22	서초구	여성	X	-	무	만55세	
23	강남구	구립(혼성 - 남 10명, 여 30명)	△	47	무	만60세	문화재단 운영
24	송파구	여성, 실버, 소년소녀	X	-	무 (내부 만25세)	무 (내부 만50세)	
25	강동구	여성	X	-	무	만55세	

※ 성인 합창단의 최소연령 및 정년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실버합창단은 제외하였음

[붙임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성북구립남성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여 합창단의 구성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구립합창단의 임기규정 정비를 통해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별표 2] 예술단체 임원 규정에 각각 “남성합창단” 항목을 신설함
-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단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만5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서 “만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개정함

3.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예술단체에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가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단원의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만5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임원회) 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단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단원의 임기는 <u>만55세</u> 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은 예외로 한다.			제9조(단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단원의 임기는 <u>만57세</u> 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은 예외로 한다.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구 분		정원	구 분		정원
예술단체명	직 위	정원(단위:명)	예술단체명	직 위	정원(단위:명)
교향악단	계	60	교향악단	계	60
	단장	1		단장	1
	지휘자	1		지휘자	1
	악장	1		악장	1
	수석단원	10		수석단원	10
	일반단원	47		일반단원	47
여성합창단	계	65	여성합창단	계	65
	단장	1		단장	1
	지휘자	1		지휘자	1
	반주자	1		반주자	1
	임원(총무, 파트장3)	4		임원(총무, 파트장3)	4
	일반단원	57		일반단원	57
극 단	계	20	극 단	계	20
	단장	1		단장	1
	연출가	1		연출가	1
	기획담당	1		기획담당	1
	수석단원	5		수석단원	5
	일반단원	12		일반단원	12
합 주 단	계	35	합 주 단	계	35
	단장	1		단장	1
	지휘자	1		지휘자	1
	전임강사	1		전임강사	1
	악기강사	7		악기강사	7
	일반단원	25		일반단원	25
실버합창단	계	53	실버합창단	계	53
	단장	1		단장	1
	지휘자	1		지휘자	1
	반주자	1		반주자	1
	임원(총무, 파트장3)	4		임원(총무, 파트장3)	4
	일반단원	46		일반단원	46
남성합창단	계	43	남성합창단	계	43
	단장	1		단장	1
	지휘자	1		지휘자	1
	반주자	1		반주자	1
	임원(총무, 파트장3)	4		임원(총무, 파트장3)	4
	일반단원	36		일반단원	36

현 행

[별표 2] 예술단체 임원(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원	비 고
(생 략)		
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	단장	1명
	지휘자	1명
	총무	1명
	소프라노 파트장	1명
	메조소프라노 파트장	1명
	알토 파트장	1명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예술단체 임원(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원	비 고
(현행과 같음)		
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	단장	1명
	지휘자	1명
	총무	1명
	소프라노 파트장	1명
	메조소프라노 파트장	1명
	알토 파트장	1명
남성합창단	단장	1명
	지휘자	1명
	총무	1명
	테너 파트장	1명
	바리톤 파트장	1명
	베이스 파트장	1명
(현행과 같음)		